

난방용 수처리제(청관제) 투입업체 선정 공고

1. 단지개요

- 가. 아파트명 :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아파트
- 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
- 다. 단지규모 : 35개동 3,375세대 (관리면적: 347,743㎡)

2.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

- 가. 입찰의 종류 : 일반경쟁입찰
- 나. 낙찰의 방법 : 최저낙찰제
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.)
- 다. 입찰의 방식 : 전자입찰 (www.k-apt.go.kr)

3. 입찰세부사항

- 가. 난방용 수처리제 연간 예상 소요량 : 약 4,720kg (12개소)
▶ $347,743\text{㎡} \times 1.36\text{ℓ} / \text{㎡}$ (난방배관 예상 관수량) $\times$ 1%(투입농도) = 연간 소요량 약 4,720kg
- 나. 난방용 수처리제 납품 및 투입 후 관리주체(생활지원센터)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① 난방용 수처리제는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.
 - ②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일 것.
 - ③ 아질산염(NO_2) 농도 : 투입 후 300ppm 이상.
 - ④ pH : 9.0~11.0
 - ⑤ 동·철 부식방지 기능.
- 다. 용역범위
 - ① 난방용 수처리제 납품 및 투입 : 투입방법과 투입일자는 협의 후 진행
 - ② 투입 후 아질산염(NO_2) 농도 및 pH 측정
 - ③ 용역 완료 후 1달 후 측정결과(NO_2 , pH) 제출하고, 12개소의 측정결과(NO_2 , pH)가 관리주체의 성능기준 충족시 계약금액을 지급한다.

4. 참가자격

- 가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(참가자격의 제한)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

5. 제출서류

※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 제27조(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)

- 가. 입찰서(부가가치세 별도), 산출내역서, 견적서, 입찰보증금(입찰금액의 5%이상). 각 1부
- 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. 각 1부
- 다.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(해당 업종에 한함). 1부
- 라.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. 각 1부

- 마.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또는 제조사 공급확인서 등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. 1부
- 바. 청관제 납품 실적내역 사본. 1부
- 사. 입찰보증증권 발급 고유번호(220-82-76925 대표자 : 김혜정)
- 아.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사실유무 확인서. 1부
- 자.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
- 차. 제품 MSDS 1부
- 카. 각 제출서류는 전자입찰(www.k-apt.go.kr) 접수함.

6. 입찰일정

- 가. 접수마감 : 2026년 7월 31일(금) 오후 17:00시
- 나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년 8월 3일(월) 09:00시, 생활지원센터 PC (www.k-apt.go.kr)
- 다. 선정방법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.

7. 기타사항

- 가.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표준시방서와 시공기준을 준용한다.
- 나.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게 있음.
- 다. 입찰 참가 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실사를 원칙으로 하며, 면적 오류와 입찰 제반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게 있음.
- 라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미제출 및 계약 후에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.
- 마. 입찰 참가업체가 서로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.
- 바.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%의 계약이행 보증금(현금,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)을 제출함.
- 사.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당 아파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, 계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아. 국토교통부 고시(제2024-196호) 제6조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 대상자에게는 그 무효 사유를 개별 통지한다.
- 자.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,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할 수 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(☎ 02-6956-8728)로 문의 바람.

2026년 7월 20일

주식회사 타워피엠씨 대표이사의 대리인
개포자이 프레지던스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(직인생략)